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15.1.8.> (앞 면)

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					처리기간 3일
선박소유자	성 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				
	주 소				
선박의 명세 (해당 사항 기재)	선박의 명칭	선 박 번 호	총 톤 수	저 장 능 력	
			G/T	M/T	
	설치장소	증명서 번호	증명서 발급 연월일	증명서 유효기간	
보장계약 증 명 서 변경 내용	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	

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날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※ 구비서류:	수수료
보험(재정보증)계약증서	2천원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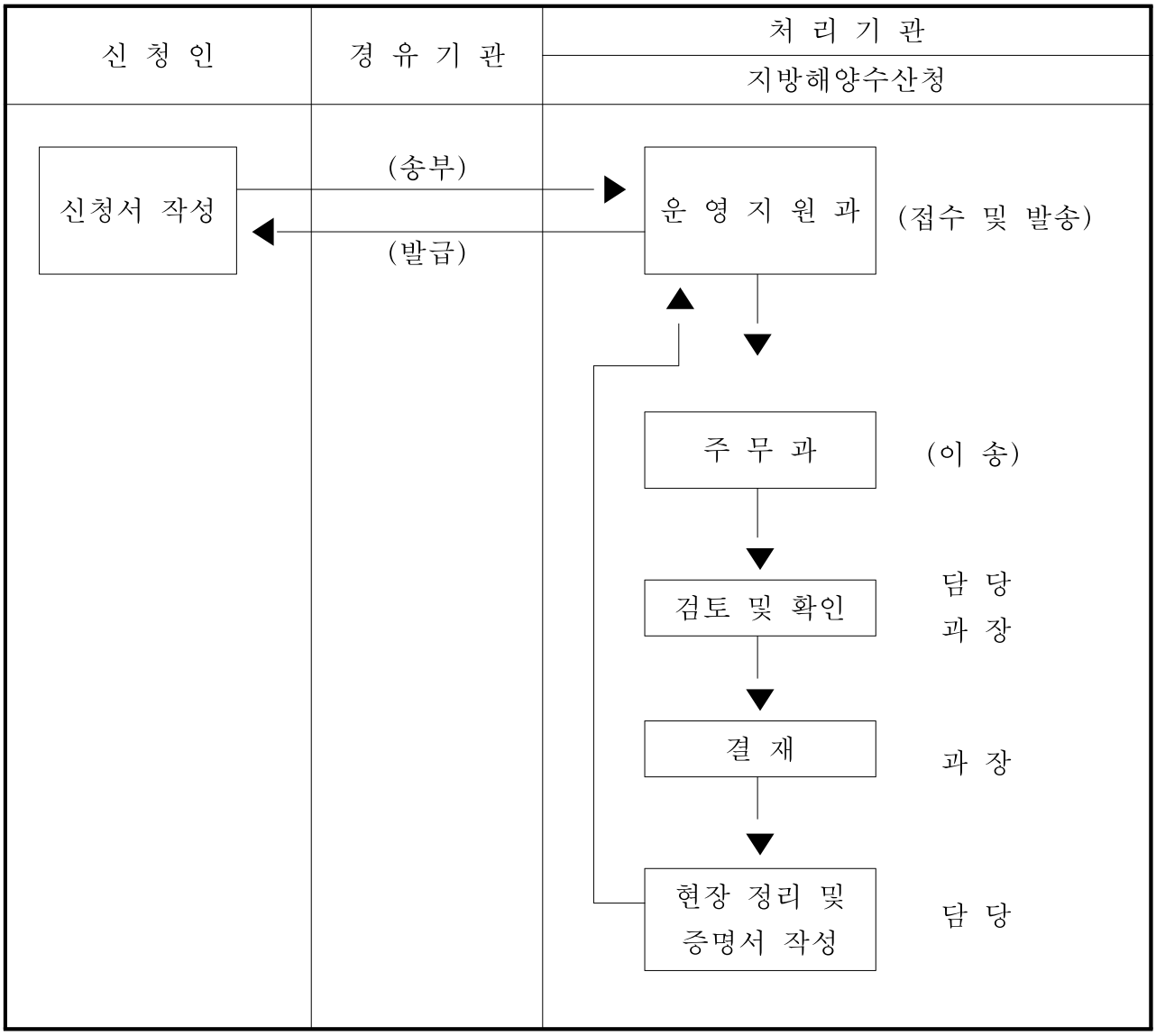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뒷 면)